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-19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

2026년 10월 01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#### 1. 개정이유

사업장 내 화재·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 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

#### 2. 주요내용

가. (사고대응 및 응급조치) 사업장 내 화재·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

－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(제29조)

① (금수성물질 관리)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

② (방폭구역 관리) 화재·폭발 구역\*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

\*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

③ (초기 소화대응) 화재·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

④ (화재 확산시 정보공유)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

나. 별지 서식번호 오기 현행화

－ 기존 별지 제13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→ 별지 제14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[law.go.kr](http://law.go.kr)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([nics.me.go.kr](http://nics.me.go.kr))의 자료실 - 법령정보 확인